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

## 검토보고서

2024. 12. .

자치행정위원회전 문 위 원

「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2024년 11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 □ 예산안 총괄

금번 추가경정 예산 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등 반영과 기편성된 예산의 삭감, 집행잔액의 반납 등 세출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추경(안)으로써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2조 5,007억 1,220만 1천원에 비하여 601억 3,062만 9천원이 증가된 2조 5,608억 4,283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6억 3,176만 7천원이 증가된 2조 1,713억 5,248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4억 9,886만 2천원이 증가된 3,894억 9,034만 9천원입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기정액		비교중감	
			예산액	구성비 (%)		구성비 (%)		중감률 (%)
	총	계	2,560,842,830	100.00%	2,500,712,201	100.00%	60,130,629	2.40%
	일반	·회계	2,171,352,481	84.79%	2,142,720,714	85.68%	28,631,767	1.34%
	특별	회계	389,490,349	15.21%	357,991,487	14.32%	31,498,862	8.80%
	공기업	<b>其특별회계</b>	185,199,965	7.23%	182,631,420	7.30%	2,568,545	1.41%
	기타특별회계		204,290,384	7.98%	175,360,067	7.01%	28,930,317	16.50%

○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총 286억 3,176만 7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세외수입 59억 9,360만 1천 원, 조정교부금 113억 1,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93억 9,276만 3천 원, 보조금등반환금 19억 2,64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639억 7,134만 6천원에서 1.80% 증가한 5,741억 3,035만 2천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6.44%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기정예산 절감분을 제외한 증액 편성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52억 9,163만 6천 원보다 0.91% 증가한 154억 3,032만 7천 원으로 겨울철 대설·한파 지원사업 1억 2,100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791억 3,546만 7천 원 보다 2.77% 감소한 2,713억 9,1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529억 537만 9천 원 보다 24.62% 증가한 659억 3,152만 2천 원으로 노후전선 정비사업 9,25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98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7억 4749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억 2,160만 5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769억 6,595만 2천 원보다 2.58% 증가한 1,815억 2,661만 1천 원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공영 주차장) 17억 원, 종교문화시설건립 28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반 환금 13억 9,658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5,007만 2천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O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별내면 인건비 부족분 3,105만 6천 원 및 수동면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1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타특별회계 운용은 공공유재산관리로 기정예산액 264억 4,634만 6천 원보다 18.84% 증가한 314억 3,015만 2천 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8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2개 기금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및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예탁 등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립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해당 기금의 정책사업비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사항이며, 규모와 증감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2023년도 말	2024	2024년도 말			
구 분	조성액(A)	수입(B)	지출(C)	증감	조성액	
	1 0 7(A)	」 月(D)	기 현 (단)	(D=B-C)	(E=D+A)	
총 계	212,008,429	115,643,852	2,494,586	113,149,266	325,157,695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46,340,678	95,643,633	2,494,586	93,149,047	239,489,725	
신청사 건립기금	65,667,751	20,000,219	-	20,000,219	85,667,970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수금 수입 증액
- ※ 신청사건립기금: 전입금 편성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증액

□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기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입세출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불필요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예산 산출액의 적정성 등 심사방향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